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정관

(1971년 4월 17일 제정)
(1974년 6월 12일 개정)
(1977년 5월 26일 개정)
(1978년 6월 9일 개정)
(1979년 5월 30일 개정)
(1981년 5월 26일 개정)
(1983년 6월 11일 개정)
(1987년 11월 12일 개정)
(1989년 5월 10일 개정)
(1991년 5월 30일 개정)
(1992년 6월 12일 개정)
(1995년 11월 22일 개정)
(1997년 12월 17일 개정)
(1999년 5월 17일 개정)
(2001년 8월 21일 개정)
(2003년 9월 16일 개정)
(2005년 8월 3일 개정)
(2006년 11월 9일 개정)
(2007년 5월 25일 개정)
(2009년 5월 15일 개정)
(2011년 6월 7일 개정)
(2013년 12월 11일 개정)
(2016년 2월 23일 개정)
(2016년 6월 9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영문명 :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건축에 관한 학술·예술·기술을 연구 연마하고 건축교육의 발전과 건축인의 지위향상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으로써 건축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주소지) 본 회는 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지회설치) 본 회는 이사회의 의결 및 총회의 인준을 거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5조(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건축에 관한 조사·연구지도 및 이에 관련된 사업
2. 회지, 논문집, 연구보고서 기타 건축에 관한 도서의 간행 및 건축정보화에 관한 사업
3. 건축에 관한 강습회·강연회·간담회·전람회·견학회 등의 개최
4. 건축에 관한 계획·감독 및 기술검토에 대한 국가 공공기관 기타 의뢰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관계 제학회와의 교류 및 회의참석

6. 건축교육의 선진적 실천, 교육내용 및 과정의 개발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의 행정・재정・사업 관련 타당성 등의 조사 연구사업
8. 기타 본 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및 회비

제6조(회원구분)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4종류로 구분한다.

1. 정 회 원
2. 준 회 원
3. 명예회원
4. 특별회원

제7조(회원자격) 각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다음의 자격 중 하나를 구비하고 이사회가 승인한 자로 한다.

가. 정규대학에서 건축 및 건축관련 분야를 전공하여 졸업한 자

나. 전문대학에서 건축 및 건축관련 분야를 전공하여 졸업하고 건축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다. 건축 및 건축관련 분야의 석・박사 학위과정에 입학한 자

라. 건축 및 건축관련 분야 종사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마. 그 외에 이사회에서 전 각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준회원은 다음의 자격 중 하나를 구비하고 이사회가 승인한 자로 한다.

가. 전문대학에서 건축 및 건축관련 분야를 전공하여 졸업한 자

나. 정규대학에서 건축 및 건축관련 분야를 2년 이상 수료한 자

3. 명예회원은 학식과 덕망이 탁월한 자 또는 본 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내외국인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로 추대한다. 명예회원은 회원이 갖는 모든 권리를 가지며 입회금 및 회비를 면제받는다.

4. 특별회원은 건축에 관계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본 회의 목적을 찬동하는 자 중 이사회의 의결로 선정된 자로 한다.

제8조(회비) ①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일단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회원의 입회금과 회비 금액은 운영규정에 의한다.

② 본 회 정회원으로서 35년 이상 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이후 회비를 면제한다.

③ 본 회의 회비는 다음과 같다.

1. 입 회 금
2. 정 회 원 회비
3. 준 회 원 회비
4. 특별회원 회비
5. 종신회비

제9조(징계 또는 제명) 본 회 회원으로서 본 회의 정관을 위반하거나 본 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 징계 또는 제명할 수 있다.

제10조(자격정지) 본 회의 회비를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자는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단, 자격정지 발효일 이후에는 체납회비의 납부로 회원자격이 복귀된다.

제11조(탈회) 본 회 회원 중 본 회를 탈회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사퇴서를 본 회 사무국에 제출함으로써 탈회된다. 또한 본인사망은 탈회로 본다.

제3장 임원, 직원 및 부서

제12조(임원의 자격 등) 임원의 자격은 임원선출규정에서 정한다.

제12조의2(임원의 정원) 본 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　　장　　1명
2. 부 회 장　　9명
3. 지 회 장　　지회별 1명
4. 이　　사　　76명(회장, 부회장, 지회장 포함)
5. 참여이사　　정회원의 2% 이내
6. 감　　사　　2명

제12조의3(임원의 성격) 각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제12조의4(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본 회 정관 제16조에서 정하는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선출직 부회장 중 호선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지회장은 해당 지회를 대표하며, 지회의 회무를 관장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 및 확대이사회를 통하여 회무의 의결에 참여한다.

⑤ 참여이사는 확대이사회를 통하여 회무의 의결에 참여한다.

⑥ 감사는 회계사무를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고 이사회 및 확대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2조의5(임원의 선출) ① 회장, 부회장 6명(선출직)은 회원의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② 부회장 3명(임명직)은 회장이 선임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다만 이 중 1인은 주무관청의 건축관련 고위공무원으로 한다.

③ 지회장은 지회규약에 따라 선출하고 회장의 승인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④ 이사 및 참여이사는 회장이 선임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⑤ 감사는 총회에서 회원의 추천을 받아 선출한다.

제12조의6(임원의 임기) ①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하지 아니한다.

②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보선된 이사의 임기는 직전 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참여이사의 임기는 종신으로 한다.

④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12조의7(임원의 해임) 회장 및 선출직 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본 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등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회장의 승인을 거쳐 총회의 결정에 따라 해임할 수 있다.

제13조(명예회장의 추대) 회장은 회장을 역임한 자를 이사회의 의결 및 총회의 인준을 받아 명예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14조(부서) 본 회에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두되 부서별 담당부회장·이사 및 간사를 회장이 위촉한다.

1. 총무부 : 본 회의 일반사무에 관한 사항, 사무경리에 관한 사항, 기타 타부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연구1부, 연구2부, 연구3부 : 학술 및 기술·예술의 연구 조사에 관한 사항
3. 지회부 : 지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업부 : 계몽, 선전 및 간행 목적에 따른 제사업에 관한 사항

5. 대외협력부 : 단체간 협력 및 공공봉사에 관한 사항

제15조(사무국 및 부설기관) ① 본 회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내에 유급직원 약간명을 두되 이사회의 의결로 회장이 임명한다. 직원은 회장, 부회장, 부서별 담당이사의 지도하에 사무를 분담한다.

② 본 회에 다음과 같은 부설기관을 두며, 별도의 운영규정을 둔다.

1. 건축연구소
2. 출판부
3. 건축정보센터
4. 교육원
5. 건축기준센터

제4장 회의

제16조(회의의 종류) 본 회 회의에는 총회(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 확대이사회 및 자문위원회를 둔다.

제17조(총회의 소집 등) ① 정기총회는 회장이 연 1회 소집하며 7일 이전에 그 회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정기총회는 위임자를 포함하여 재적 정회원의 50분의 1 이상으로 성립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이사회 및 확대이사회의 회의 소집의결이 있거나 회원 150명 이상이 연서하여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집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8조(이사회 및 확대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부회장 및 이사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② 확대이사회는 회장·부회장·참여이사 및 이사의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③ 이사회는 연 4회 이상, 확대이사회는 연 2회 이상 회장이 소집하며, 이사회 또는 확대이사회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임시이사회 또는 임시확대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9조(자문위원회) ① 정부의 건축관련 정책 및 학회운영과 관련하여 회장을 자문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전임회장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필요시 회의를 소집한다.

제20조(의결) 총회, 이사회, 확대이사회에서의 의사는 다수결로 의결한다.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개폐 및 변경에 관한 인준
2. 기본자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인준
3. 회장, 선출직 부회장 및 감사를 제외한 임원의 인준 및 해임
4. 지회설치에 관한 인준
5. 사업계획의 승인
6. 예산 및 결산의 승인
7.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2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개폐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규정 및 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기본자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지회설치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제명징계 및 권리행사에 관한 사항
7.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8. 포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9.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10.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3조(확대이사회 의결사항) 확대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학회운영에 관한 사항
2.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3.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4조(의사록의 보관 등) ① 총회, 이사회 및 확대이사회의 회의록은 회장·부회장 및 담당이사가 서명날인하여 5년동안 사무국에 보관한다.

② 총회, 이사회 및 확대이사회 개최결과는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2주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5장 자산 및 회계

제25조(자산의 구성) 본 회의 자산은 다음 항목으로 구성한다.

1. 기본자산

가. 건축회관·건축센터의 대지 및 건물

나. 기본자산으로 지정 기부된 찬조금 및 물건

다. 통상자산 운영에서 생긴 수익금, 채권 등 유가증권 및 물건 중 총회에서 기본자산으로 편입을 의결한 자산

2. 통상자산

가. 회원이 납부한 입회금 및 회비

나. 찬조금과 찬조 받은 물건

다. 기본자산에서 생긴 수익

라. 각종 사업활동에서 생긴 수익

마. 기타의 수입

3 기타자산

가. 집기, 비품 등

나. 회무자료, 기록물, 자료 및 자산목록 등 유·무형 자료성질의 자산

다.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라. 기본자산 및 통상자산 이외의 자산

제26조(기본자산의 조성) 기본자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도 결산이월금의 1할 이상을 적립할 수 있다.

제27조(기타자산의 범위) 기타자산의 범위는 별도의 내용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등재된 것으로 한다.

제28조(경비) 본 회의 경비는 통상자산으로써 충당한다.

제29조(자산의 관리) 기본자산의 관리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하고 본 회의 모든 자산은 회장이 이를 관리한다.

제30조(특별회계)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제31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4월1일부터 익년 3월31일까지로 한다.

제6장 지회 및 국외지역 간사

제32조(지회의 구성) ① 지회는 해당 시도 및 외국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지회구성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정회원 100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이미 설치된 지회는 예외로 한다.

③ 회원은 근무지 당해지역 지회에 소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3조(지회임원) 지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둘 수 있다.

1. 지 회 장	1명
2. 부지회장	약간명
3. 평의원	약간명
4. 지회이사	약간명
5. 감사	2명
6. 분과위원장	약간명

제34조(지회임원의 선출) 지회임원은 지회규약에 따라 선출한다.

제35조(지회장의 의무) ① 지회장은 매년 3월에 임원명단, 회원명단, 전년도의 회계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본 회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회장은 회원의 이동이 있을 때는 즉시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지회의 의무) 지회는 본 회의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이행할 의무를 갖는다.

제37조(지회규약) 지회규약은 지회가 작성하되 본 회 정관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본 회 이사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8조(지회운영) 지회운영은 지회에 소속하는 통상자산으로 충당한다. 지회의 통상자산 중 본 회에 납부하는 비율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9조(지회총회의 참석) 지회총회시에는 본 회에서 회장, 부회장 중 1인이 참석한다.

제40조(국외지역 간사) ① 지회가 설치되지 않은 국외지역의 회원을 위하여 그 지역에 국외지역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국외지역 간사는 그 지역주재 정회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국외지역 간사의 임기는 본 회 임원과 같다.

③ 국외지역 간사는 매년 3월에 소속회원 명단을 회장에 보고하여야 하고 회원의 이동이 있을 때는 즉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국외지역 간사의 권리) 국외지역 간사는 본 회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7장 정관변경과 해산

제42조(정관의 개폐 및 변경에 관한 인준) 정관의 개폐 및 변경은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3조(해산) 본 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의 3/4 이상의 동의를 얻어 등록

철회에 따른 주무관청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4조(자산의 처리) 본 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자산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처리한다.

부칙

1. 본 회 정관의 미상한 것은 규정으로 정한다.
2. 제21조제1호 및 제21조제2호는 주무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구정관하에 등록된 회원 및 선출된 임원은 본 정관이 발효되는 날 본 정관 하에 등록된 회원 및 선출된 임원으로 본다.
4. 본 정관은 1971년 4월 17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5. 본 정관은 주무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은 1974년 6월 12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6. 본 정관은 주무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은 1977년 5월 26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7. 본 정관은 주무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은 1978년 6월 9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8. 본 정관은 주무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은 1979년 5월 30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9. 본 정관은 주무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은 1981년 5월 26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0. 본 정관은 주무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은 1983년 6월 1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1. 본 정관은 주무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은 1987년 11월 12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2. 본 정관은 주무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은 1989년 5월 10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3. 본 정관은 주무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은 1991년 5월 20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4. 본 정관은 주무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은 1992년 6월 12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5. 본 정관은 주무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은 1995년 11월 22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6. 본 정관은 주무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은 1997년 12월 17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7. 본 정관은 주무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은 1999년 5월 17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8. 본 정관은 주무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은 2001년 8월 2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 본 정관은 주무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은 2003년 9월 16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 본 정관은 주무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은 2005년 8월 3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1. 본 정관은 주무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은 2006년 11월 9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2. 본 정관은 주무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은 2007년 5월 25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3. 본 정관은 주무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은 2009년 5월 15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4. 본 정관은 주무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은 2011년 6월 7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5. 본 정관은 주무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은 2013년 12월 1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6. 본 정관은 주무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은 2016년 2월 23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7. 본 정관은 주무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은 2016년 6월 9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